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 등 만

나. 개정사유

- o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농장에 대하여 순회 수리 정비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o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 - 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
- o 수리반의 기능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농기계 고장 예방교육
- o 3 - 10월까지 오지마을을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 o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비용으로 징수 할 수 없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o 화순군 농기계 이동수리소를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으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수리반의 편성 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검토 보고함.

4. 질의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론요지 : “ 생 략 ”

6. 심사결과 :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하여 관내마을 순회수리 정비를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 편성)①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 운영 한다.

②수리반은 농기계교관, 농기계운전기사 등으로 편성한다.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운영 기간중에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3조 (기능)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② 농기계고장 예방을 위한 현지교육 및 사용지도와 농민기술 병행 실시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기대수리

④ 기타 농기계수리 및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① 3 ~10월까지는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농한기는 사용전 월동기 점검지도와 내방 수리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제5조 (비용징수)① 농기계를 수리한 사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단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망실또는훼손불용품)①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필지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한다.

②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경과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